

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아래 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의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후 등기우편으로 불인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. 6. 21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

- 1. 건 명: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 공시송달
- 2. 근 거: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26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주 소	송달 서류의 명칭	송달의 주요 내용	송달불능 사유
김○루	1995. 5. 14.	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봉무로 45, 단독주택	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및 심사청구 안내 각 1부	- 처분의 제목: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- 근거: 고용보험법 제40조 - 사유: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 - 불복청구: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원 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	수취인 불명으로 등기 2회 반송 ('24년 6월 11일 최초 발송, 6월 18일 재발송)

- 4. 공 고 기 간: 2024. 6. 26.~7. 10.(14일간)
- 5. 문 의: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용인고용센터 이지은 주무관(Tel. 031-289-2230)